

# 고용노동부

#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

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,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



## 지원대상

### 기업
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(단,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)
- 23년 중 지원대상 청년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(단,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)
- 연 매출액이 '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× 1,800만원' 이상인 기업 (단,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)

### 청년

-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
-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(고용보험 가입자,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참여 불가)
-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제외
- 취업애로청년
  -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(일용근로 제외)
 (단, 고졸 이하, 국민취업제도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등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능)

## 지원수준

-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 (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,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분할지급)
- 청년 1인당 월 60만원\*12개월 최대 720만원 2년 근속 시 최대 480만원 추가지원

## 지원한도

- 사업 참여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(최대 30명)
- 비수도권 소재 기업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제외)은 특례에 따라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%(최대 30명)까지 지원 가능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도권 기업                   | 피보험자 수의 최대 50% (최대 30명)  |
| 비수도권 기업 (서울, 인천, 경기도 제외) |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% (최대 30명) |

\*사업 참여 신청 이전(3개월 이내)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,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

## 신청방법

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

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

[www.work.go.kr/youthjob](http://www.work.go.kr/youthjob)

운영기관 (주)커리어스타 지정

## 신청문의

(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점 문의)

- 고용노동부 민간위탁기관 (주)커리어스타

☎ : 053-384-8890, 010-5645-8890

cs3848890@daum.net

\* 사업장 소재지 : 대구(수성구, 중구, 북구, 동구) 경산시, 영천시, 청도군, 군위군